

2026년도 신정4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노래교실 1반) 강사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정4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노래교실 1반)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및 방법: 1명, 공개모집
- 강의기간: 2026년 10월 ~ 12월(3개월)
- 모집분야

연번	프로그램명	강 의 일 시		모집 인원	수 당
		요 일	시 간		
1	노래교실 1반	목	10:00~12:00	1명	40,000원/시간당

※주민자치센터 사정에 의해서 강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서 접수

- 기 간: 2026. 9. 14.(월) ~ 9. 21.(월) 18:00까지
- 장 소: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 1층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시~18시 접수)

3. 지원자격

- 해당 분야 협회 소속 강사 우대
-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 기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자

4. 결격·협약 취소 사유

- 강사 지원 시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2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폐강되는 경우
- 기타 교육 운영 등 강사로서 활동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필요 시)을 통하여 선정
※ 면접은 필요 시 진행하며, 면접 일정은 개별 통보

6. 선정기준

- 전문협회 소속 강사 우대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및 경력 유무
-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및 강의 경험 유무
-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적합 유무 등

7.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8. 제출서류

-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사진부착)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강의계획서 1부
- 해당분야 협회 소속 증명서 1부(해당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해당분야 대회 입상 증빙자료 1부(해당자)

9. 기타사항

- 응시 원서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강사와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 지원자 중 차순위자를 강사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226-2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장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 신청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자택)			휴 대 폰		
지원분야 (강의분야)	유급			지원사유	
	자원봉사				
E-mail			최종학력		
자격·면허 (사본 첨부)	자격·면허명	발행처	자격·면허명	발행처	
년 월 일	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각1부, 반명함 사진 1매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이력서

사 진 부 착 (3cm × 4cm)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현 주소	(-)					
	연락처	자택		핸드폰		E - 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학 과	졸업년도	비고
	년	월	년	월	고등학교	(주/야)		
	년	월	년	월	전문대학	(주/야)		
	년	월	년	월	대학교	(주/야)		
	년	월	년	월	대학원	(주/야)		
	년	월	년	월	기타 :	(주/야)		

[illegible]

자 건 번호 수 상 명 칭	종류 및 등급	취득일	발행처	수 상 현 황	수상종류	수상일자	수여기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일일 성명 : (인)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담 당 업 무		근 무 부 서
근 무 년 한					
퇴 직 사 유					
용 도					

확인담당자 :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주민자치센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택			H · P	
지원분야			지원사유		
E-mail			최종학력		
자격·면허	자격·면허명	발행처		자격·면허명	발행처
강의분야 및 수준			강의 가능시간		
강의요약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내용, 방법)	별첨 강의계획서 상세 자료 제출				

상기와 같이 신정4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며
향후 신정4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정 시 신정4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약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울산광역시남구신정4동장 귀하

강 의 계 획 서

프로그램 명	노래교실 1반	장 소	신정4동 주민자치센터
강 의 기 간	2026. 10월 ~ 12월	강의시간	목 10:00 ~ 12:00
강 사 명		연 락 처	

월 별	주 별	수업횟수	강 의 내 용	비 고
10	1주			
	2주			
	3주			
	4주			
	5주			
11	1주			
	2주			
	3주			
	4주			
	5주			
12	1주			
	2주			
	3주			
	4주			
	5주			

신정4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의 협약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장을 “갑”이라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을”이라 정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의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의 협약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명) ① “을”은 “갑”이 개설하는 노래교실 1반 프로그램의 강의를 담당한다.

② 담당 프로그램의 변경은 “갑”, “을”의 협의에 의하며, 이에 따른 협약서의 개정이 없으면 “갑”이 발간하는 프로그램 운영 안내 홍보물의 내용을 협약서로 간주한다.

제3조(강사료) ① “갑”은 “을”에게 강사료를 시간당 40,000원씩 지급한다.

② 1항의 강의 시간은 “갑”이 발간하는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의 내용에 따른다.

③ 강사료는 산정되는 금액에서 법규에 정해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수강 인원 모집결과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정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15명, 정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20명)미만 또는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하거나 시간·요일 등을 변경할 때에는 “을”은 “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갑”이 개설하는 프로그램의 한 과정기간은 3개월로 한다.

2. “을”은 “갑”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적 차원의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출강하고 최선을 다해 강의하여야 한다.

3. “을”은 교육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갑”과 협의 없이 부대비용을 회원에게 요구하지 못하며 강의 시간 중에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자료 등 제출) “을”은 협약 후 신상과 프로그램 계획 등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과정별 강의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①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코로나19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변경이 있을 시 을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협약취소)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2개월 이상 강의를 어려운 경우

2.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8조(분쟁의 조정) 본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라 “갑”, “을” 간에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계약서)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일 일

(갑) 울산광역시남구 신정4동장 (인)

(을) 강 사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소